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통무예진흥법시행규칙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이유

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전통무예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89호, 2026. 5. 12. 시행)됨에 따라,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기준 마련(안 제2조)

- 1)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, 전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
- 2)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전승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통적 가치 있다고 인정될 것
- 3) 복식, 용어, 예법, 기술체계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것
- 4)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가 인정될 것
- 5) 수련을 통하여 체력 증진,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

나.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절차 마련(안 제3조)

- 1) 신청서 접수 및 심의, 공고절차 규정

다.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취소 등(안 제4조)

- 1) 법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등의 관련 절차 규정

라.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(안 제5조)

1) 실기 및 필기시험 등 자격검정의 방법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6. 4. 1. ~ 5. 6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완료

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통무예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) ① 「전통무예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에서 자생하였거나,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형성·발전한 것으로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어 전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
2. 문헌, 기록, 구전자료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전승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통적 가치 있다고 인정될 것
3. 복식, 용어, 예법, 기술체계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
4.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가 인정될 것
5. 수련을 통하여 체력 증진,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통무예 육성종목의

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세부 평가 기준
2. 평가 및 검증 방법
3. 신청서 양식 및 접수 방법
4. 심사 및 진행 절차
5. 그 밖에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신청을 하려는 종목 또는 단체(이하 “종목·단체”라 한다)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1. 종목 또는 단체명
2. 지정 사유
3. 그 밖에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

제4조(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

제7조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 종목·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목단체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의견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종목·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관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격 검정의 방법)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·전통무예단체에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,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 한다.

④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3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.

⑤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방법, 시험과목, 평가기준, 자격증

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⑥ 법 제11조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	
연 락 처	(044) 203 - 3147